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60-1996-176422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95-16 제5층 제50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6년9월17일	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95-16	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 1층 340.46㎡ 2층 335.16㎡ 3층 259.87㎡ 4층 253.71㎡ 5층 243.70㎡ 6층 233.69㎡ 지층 411.20㎡ 옥탑 42.30㎡	도면편철장 제3책 제447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4월 14일 전산이기
2		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95-16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0길 43	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 1층 340.46㎡ 2층 335.16㎡ 3층 259.87㎡ 4층 253.71㎡ 5층 243.70㎡ 6층 233.69㎡ 지층 411.20㎡ 옥탑 42.30㎡	도로명주소 2011년12월9일 등기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95-16 제5층 제502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재지번	지목	면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95-16	대	576.3㎡	1996년9월17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4월 14일 전산이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수	건물번호	건물내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96년9월17일	제5층 제502호	철근콘크리트조 54.00㎡	도면편철장 제3책제447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4월 14일 전산이기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576.3분의 20.09	1996년9월13일 대지권 1996년9월17일
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4월 14일 전산이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소유권이전	1997년3월25일 제30882호	1996년12월28일 매매	소유자 장정례 360420-***** 서울 관악구 봉천동 713-34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4월 14일 전산이기
2	소유권이전	2001년10월5일	2001년4월21일	소유자 채재호 570405-*****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95-16 제5층 제502호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제85314호	협의분할에 의한 상속	서울 관악구 봉천동 675-13
3	소유권이전	2008년1월4일 제791호	2007년11월10일 매매	공유자 지분 2분의 1 오윤영 470520-*****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141-1402 지분 2분의 1 한순애 530625-*****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141-1402 거래가액 금97,000,000원
4	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	2008년5월2일 제41781호	2008년3월11일 매매	소유자 한상운 870626-*****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37-261 거래가액 금110,000,000원
4-1	4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	한상운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0가길 7(미아동) 2013년11월14일 부기
4-2	4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		2016년2월29일 전거	한상운의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1, 1204호(구로동, 대림역포스큐) 2016년6월17일 부기
5	소유권이전	2016년6월17일 제37195호	2016년2월26일 매매	소유자 정영숙 420726-*****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67-7, 102호(가회동, 안국메트로빌) 거래가액 금160,000,000원
6	가압류	2023년11월1일 제161681호	2023년11월1일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(2023카단841)	청구금액 금350,000,000 원 채권자 전주행복신용협동조합 210141-000124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2길 4(여의동2가)
7	강제경매개시결정(6번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)	2024년9월30일 제158723호	2024년9월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(2024타경5165)	채권자 전주행복신용협동조합 210141-000124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2길 4 (동산동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2)	근저당권설정	2000년9월26일 제60625호	2000년9월25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일천구백이십만원정 채무자 장정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13-3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하나은행 110111-0117063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-1 (수유동지점)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04월 14일 전산이기
1-1	1번근저당권변경	2001년10월24일 제91868호	2001년10월24일 계약인수	채무자 채재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675-13
1-2	1번근저당권이전	2007년12월3일 제98012호	2002년12월2일 회사합병	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하나은행 110111-001567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-1 (수유동지점)
2	1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07년12월3일 제98013호	2007년12월3일 해지	
3	근저당권설정	2013년11월12일 제75689호	2013년11월12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54,000,000원 채무자 환상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37-26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-1 (쌍문북지점)
4	3번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	2016년6월20일 제37645호	2016년6월17일 해지	
5	근저당권설정	2018년6월11일 제28104호	2018년6월11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72,000,000원 채무자 정영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67-7, 102호 (가회동, 안국메트로빌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-2365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(여의도동) (쌍문동지점)

-- 이 하 여 백 --

열람용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- 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60-1996-176422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95-16 제5층 제5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정영숙 (소유자)	420726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67-7, 102호(가회동, 안국메트로빌)	5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6	가압류	2023년11월1일 제161681호	청구금액 금350,000,000 원 채권자 전주행복신용협동조합	정영숙
7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9월30일 제158723호	채권자 전주행복신용협동조합	정영숙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5	근저당권설정	2018년6월11일 제28104호	채권최고액 금72,0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	정영숙

[참 고 사 항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